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‘상호’ 를 교류 협력 해외도시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‘친선’ 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‘상호결연’ 을 ‘친선결연’ 으로 수정함(안 제2장, 안 제5조 ~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 등).
- 나. ‘상호결연도시’ 를 ‘친선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5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13조제3호 등).
- 다. ‘상호우호도시’ 를 ‘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13조, 안 제22조제1항제3호 등).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장의 제목 중 “자매결연” 을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한다.

안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하고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13조 중 “상호우호도시 등” 을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한다.

안 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상호우호도시” 를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<u>자매결연</u>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</p> <p>제6조(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</p>	<p>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상호결연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상호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상호결연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<u>상호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<u>상호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상호결연</u> ----- -----</p>	<p>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친선결연</u>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<u>친선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친선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<u>친선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</p>

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7조(자매결연의 의결)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

-----.

③ 상호결연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상호결연의 의결) --
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상호결연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③ 친선결연-----

-----.

1. ~ 6.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친선결연의 의결) --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친선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친선결연-----

를 계속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.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장은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“도시의 날“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
-----상호우호도시 등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
-----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-----

-----.

- 1. ~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상호결연도시-----

-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- 3. -----친선도시-----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생략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
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자매우호도시</u>,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상호우호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친선도시</u>, <u>우호협력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	--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“자매결연”을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하고,
제2항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
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하고, 제9조와 제10조 중 “자매
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자매우호도시 등”을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호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자매우호도시”를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	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
제5조(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<u>자매결연</u> 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	제5조(<u>친선결연</u> 등) ① -----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.
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	② <u>친선도시</u> ----- ----- -----.
제6조(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	제6조(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자매결연</u>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.	③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7조(<u>자매결연</u> 의 의결) 시장은 외국도	제7조(<u>친선결연</u> 의 의결) -----

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자매 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장은 자매우호 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“도시의 날“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3. 그 밖에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친선 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친선도시-----
시, 우호협력도시 등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친선도시-----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
(생략)

1. ~ 2. (생략)

3. 자매우호도시,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

4. (생략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
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-----

4. (현행과 같음)